

瑞山市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1999. 7. 23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9. 7. 23

라. 上程日字 : 1999. 7. 27

2. 提案說明要旨 (提案說明 : 企劃監查擔當官 金知榮)

가. 提案理由

- 현행 「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」 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중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부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동 조례안 제5조제2호 “주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, 정책에 관한 사항”을 주민공개 제한 규정에서 삭제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그동안 「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」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, 투명성 확보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으나,
- 주민공개사항중 일부 제한규정에 대하여 완화하여 지방재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동소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 시대 조류에 부합되는 조치로 판단되며,
 - 특히,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취지에도 합당하다고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

- 질의 : 조례안 제5조제3호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도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시설공사의 범위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
- 답변 : 기밀에 속하는 시설공사에는 군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, 이 조문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악용의 방지를 위해 행정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음.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8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7.23.

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3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□ 개정 이유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.

□ 주요 골자

-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주민공개를 하고 있으나 일부 제한 규정중 「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·정책에 관한 사항」도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에서 삭제코자 함

□ 참고 자료

가. 근거 법령

-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

나. 입법예고 : 필요없음

다. 서산시규제개혁 심의회

- 심시 : '99. 6. 23
- 결과 : 완 화
- 자치단체별 행정규제 정비계획 시달 (기감05090 - 937('99.6.25))

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5조(주민공개제한)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</p> <p>3. 생략</p>	<p>제5조(주민공개제한)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